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726
----------	------

2021년 9월 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19일
- 다. 상정일자 :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1년 9월 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
 - 발행대상 : 재난관리기금 조성
 - 발행금액 : 3,000억원
 - 필 요 성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4.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안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3,000억원 발행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임.
-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¹⁾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재정투자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과 같은 투자성 사업과,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 등’에 한하여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목적의 이번 지방채 발행은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동 동의안이 제출된 것임.

-
- 1)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 ⑤ (생략)

■ 재난관리기금 자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의 법리적 검토

- 재난관리기금 자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제6조제3항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채 발행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2³⁾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각 호에 명시된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만 지방채 발행이 가능토록 한정하고 있는데 각 호에 명시된 법률에 「지방기금법」이 포함되어 있어 동 지방채 발행은 법리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2)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1. ~ 16. (생략)

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8. ~ 21. (생략)

■ 2021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수입·지출현황

- '21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에서는 '21년 일반회계 전입금 1,459억원을 비롯한 국고 보조금 326억원, '21년 제1회 추경 전입금 531억원, 지방채 발행 3,000억원, 이자 40억원 등 '21년 8월 초 기준 총 7,179억원을 재원으로 조성했으며,

[표] '21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수입현황

(단위: 천원)

계	2020년 결산액	2021년 적립액	국고 보조금	추경 전입금	지방채 발행액	이자수입
	717,868,762	145,923,000	32,614,000	53,100,000	300,000,000	3,994,164

- 방역물품 구입,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4,191억원, 풍수해 등 일반재난 관리에 720억원, 사고이월 100억원 등 총 5,011억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은 2,167억원이며,

[표] '21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지출현황

(단위: 천원)

계	코로나19 대응			일반재난 관리			사고이월	기금 관리비		
	소 계	방역 지원 물품 구매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소 계	재난예방	응급복구 연구용역				
	501,120,900	419,121,182	129,727,182	289,394,000	71,988,400	71,938,400	-	50,000	10,004,925	6,393

- 잔액 2,167억원에 대해서는 연간 법정적립액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21.2월)⁴⁾에 따라 '21년 법정

4) '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2021.2.)

제5장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제2절 코로나19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3. 재원관리

○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연간 법정적립액' 규모 이상으로 연중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기금 예산 상황과 집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난관리기금 외의 타 재원(일반회계, 재난대책예비비 등)을 우선 검토하여 급격한 기금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기금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추경 등을 통해 기금을 사후 보전하여야 한다.

적립액 1,459억원⁵⁾을 제외하고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118억원, 풍수해 등 일반재난 관리에 590억원의 재원이 가용한 것으로 파악됨.

[표] '21년도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가용재원 현황

(단위: 천원)

계	재원관리 ('21년 법정적립액)	코로나19 대응			일반재난 관리				기금 관리비
		소 계	방역 지원 물품 구매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소 계	재난예방	응급복구	연구용역	
216,747,862	145,923,000	11,814,398	1,208,398	10,606,000	59,006,857	8,056,857	50,000,000	950,000	3,607

- 따라서,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 진정을 낙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확산세가 현재 수준보다 낮았던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대응에 4천억원을 상회하는 재원이 지출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가용재원 118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 할 수 있음.
- 참고로, 금회 제2회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시·구 생활치료센터 확대 운영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적립예산 648억 3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

5) 최저적립액: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

$$145,923\text{백만원} = \frac{(13,575,826\text{백만원} + 14,643,579\text{백만원} + 15,537,689\text{백만원})}{3} \times \frac{1}{100}$$

산출내역(C=A-B)	보통세(A)	재산세(B)	비고
13,595,826백만원	15,884,110백만원	2,288,284백만원	17년 산출액
14,643,579백만원	17,141,564백만원	2,497,985백만원	18년 산출액
15,537,689백만원	18,378,786백만원	2,841,097백만원	19년 산출액

■ 2021년 서울시 지방채 발행현황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6)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여력 및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21년 서울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조 8,042억원(기본한도액 1조 6,103억원 + 별도 한도액 1조 1,939억원)이며,

[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기준

구 분		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시·군·구
총 한 도 액	기본 한도액	【경상일반재원 - (채무잔액 + BTL 임차료 + 우발채무 50%)】 × 10%	
	대도시 특례	기본한도액의 10% 추가	
	별도 한도액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차환액 + 지역일자리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경상일반재원=일반재원-임시적 세외수입 【일반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BTL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 6)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제41조제1항 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 미만일 때에는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액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재정부담상황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행정기구(같은 항 후단에 따른 공동 행정기구를 포함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과 제2항에 따라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더한 금액은 해당 시·도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 이미 발행한 지방채 1조 785억원에 발행예정인 지방채 1조 5,032억원을 감안하면 한도 잔액은 2,225억원(이월액 별도)으로 동 동의안에 제시된 지방채 발행 3,000억원이 추가될 경우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지방재정법」 제11조 제3항7)에 따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필요한 상황이 되나,

[표] '21년 8월 기준 지방채발행 한도현황

[단위 : 억원]

한도액 (A)	발행			2차추경 발행 조정분 (E)	한도 잔액(이월액 별도)	
	당초 계획 (B+C+D)	발행 실적 (C)	발행 예정 (D)		추경 미반영시 (F=A-B)	추경 반영시 (G=A-B-E)
28,042	25,817	10,785	15,032	△ 1,055	2,225	3,280

- 서울시는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당초 계획했던 지방채 발행 사업에서 1,055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제출([표] 참조)하였고 동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도 잔액은 3,280억원(이월액 미반영)이 되어 금회 제출된 지방채 발행

- 7)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④ ~ ⑤ (생략)

3,000억원이 추가되더라도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지는 않게 됨.

[표] '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지방채발행액 감액

[단위 : 백만원]

구분	부서명	회계명	사 업 명	발 행 액		
				당초	변경	증감
계				263,650	158,113	△105,537
감액	공공주택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45,650	157,000	△88,650
	동북권사업과	도시개발특별회계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18,000	1,113	△16,887

- 한편, 지난 해부터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은 '20년 1,500억원, '21년 3월 발행한 3,000억원(금회 제출된 3,000억원 별도)으로 그 이자비용만 한 해 4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표] 지방채 발행 현황

발행액	용 도	연리	상 환 기 간	발 행 방 법	발행시기
1,500억원	소상공인: 1,000억원	1.237%	5년	증권차입	2020년7월
	풍수해: 500억원				
1,500억원	취약계층: 396억원	1.275%	3년	증권차입	2021년3월
	소상공인: 1,104억원				
1,500억원	소상공인: 1,500억원	1.710%	5년	증권차입	2021년3월
3,000억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2,000억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1,000억원	(예상) 1.898%	(예상) 5년	(예정) 증권차입	(예정) 2021년8월

- 금년 3월 발행한 지방채 3,000억원의 이자비용(22억 39백만원)에 근거해 추계해 보면 동일한 규모에 유사 발행조건(이자, 상환기간 등)을 가정 시 연간 2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자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금회 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규모(3,000억원)에 대한 의견

- 본 동의안에서 제시된 지방채 발행 규모 3,000억원의 사용(예정)처는 방역물품 구매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1,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2,0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됨.

[표]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대상사업	금액	세 부 사 업
코로나-19 확산 방지	1,000억원	- 방역물품 구매 - 다중이용시설 방역 -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지원(인력, 안심밴드, 스마트폰 임대 등) - 검체 채취 및 진단검사 지원 - 임시선별검사소·선별진료소 운영지원 - 역학조사 인력 지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물품, 시설운영 등)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2,000억원	-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추이를 전망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소요예산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 재난관리기금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해 9,386억원을 지출했으며,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간 4,174억원을 지출한 것을 감안하면 3,000억원이 추가되더라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상황임.
- 참고로, 금년 3월 발행한 지방채 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대부분 집행한 상태임([표] 참조).

[표] '21년 3월 발행한 지방채 집행 세부 내역

구 분	금액(천원)	주요 내용
계	289,394,000	
제2차 심의 ('21. 2. 9.)	15,000,000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제4차 심의 ('21. 3. 29.)	257,754,000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서울 소재 관광·MICE업 소상공인 자금, 서울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서울시 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
제5차 심의 ('21. 4. 7.)	16,188,000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서울시 소상공인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추가 심의),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추가 심의)
제6차 심의 ('21. 4. 26.)	452,000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신청

■ 종합의견

-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한 추가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사료됨.
- 다만, 한정된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재원에서 이미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지출이 있었으며, 그간 누적해 왔던 적립금도 상당부분 소진된 상황에서 풍수해, 태풍, 폭설 등의 일반 재난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음.
- 또한, 서울시 지방채 발행한도와 관련해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적기 대응을 위한 긴급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제출되었으나, 이는 금회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당해연도 기정 지방채 발행사업의 일부 감액(△1,055억원)이 의회 승인

을 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 이들 지방채 발행 감액안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최종 본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본 동의안의 지방채 발행 한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난 9월 2일 제2회 추경안이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 한도문제는 해소됨.
- 한편, 본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를 전제할 때 지방채 발행에 따른 서울시의 채무관리계획 상 안게 되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채무규모, 상환일정, 금리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3,000억원을 일시에 발행하기 보다는 우선순위를 두어 단계별로 최소한으로 발행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 발행 자체를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붙임] 1.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사업설명서(서울시)
2. 2021년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기정예산)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1. 발행 필요성

- '21년 6월말 4차 대유행 본격화 및 하반기 확진자 대폭 증가 가능성
- 방역물품 구매·지원, 확진자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확진자 치료시설 및 인력 운영을 강화해야 할 상황
- 매출감소, 폐업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및 사회 취약계층 적기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자원 확보 필요
- 불확실한 코로나19 확산·전파 상황에서 의무예치금 및 일반 재난관리(폭설, 한파 등) 목적 외에 기금 가용자원 144억원에 불과 (제2차 추경안 기금 적립금 648억원 별도)

《 2021년 재난관리기금 현황 》

('21. 8. 3. 기준, 단위 : 억원)

조성액								집행(예정)액				가용금액 (a - b)
계 (a)	예치금			지방채 (모집 공채)	추경	국고 보조금	0자 수입 등	계 (b)	코로나 19	의무예치 등 자원관리	일 반 재난관리	
	소계	'20년 잔액	'21년 적립금									
7,178	3,281	1,822	1,459	3,000	531	326	40	7,058	4,189	1,459 <small>(의무예치금 219)</small>	1,410 <small>(예방800 풍수해500, 연구용역10 이월100)</small>	120

《 코로나19 관련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20.2월 ~ '21.8월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8월 현재)
계	9,386	4,189
코로나19 확산 방지	1,584	1,295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7,802	2,894

2.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3. 발행계획

발행액	차입선	연리	상환기간	상환재원	발행방법	발행시기
3,000억원	모집공채	1.898%	5년	전액시비	증권차입	2021년

※ 세부 발행조건은 지방채 발행 시점에서 변동 가능

4. 대상사업

- **코로나19 확산 방지 : 1,000억원**
 - 방역물품 구매
 - 다중이용시설 방역
 -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지원(인력, 안심밴드, 스마트폰 임대 등)
 - 검체 채취 및 진단검사 지원
 - 임시선별검사소·선별진료소 운영지원
 - 역학조사 인력 지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물품, 시설운영 등)
-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2,000억원**
 -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2021년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실본부·국	사업명	발행액
총 계			2,581,683
일반회계			36,600
1 (신규)	지역발전본부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M+센터) 건립	24,000
2 (신규)	복지정책실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별관 건립	2,400
3 (신규)	시민건강국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8,200
4 (신규)	푸른도시국	단절된 녹지축 연결(양재고개)	2,0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091,950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공채	773,850
6	도시기반시설본부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60,000
7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45,000
8	도시교통실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23,100
9	도시기반시설본부	지하철 건설부채(차환)	190,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11,000
10	도시교통실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81,000
11 (신규)	도시기반시설본부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	30,000
주택사업특별회계			245,650
12	주택건축본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45,650
도시개발특별회계			710,683
13	경제정책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8,183
14	안전총괄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8,000
15	안전총괄실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59,000
16	안전총괄실	신림~봉천터널 건설	22,000

연번	실·본부·국	사 업 명	발 행 액
17	안 전 총 괄 실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28,000
18	안 전 총 괄 실	월드컵 대교 건설	54,500
19	안 전 총 괄 실	안양교 확장	17,000
20	안 전 총 괄 실	양재대로 구조개선	8,000
21	안 전 총 괄 실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비	55,000
22	푸 른 도 시 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420,000
23	물 순 환 안 전 국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5,000
24 (신규)	물 순 환 안 전 국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6,000
25 (신규)	물 순 환 안 전 국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2,000
26 (신규)	지 역 발 전 본 부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18,000
균형발전특별회계			34,800
27	문 화 본 부	평창동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14,000
28	문 화 본 부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3,000
29	문 화 본 부	아동 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1,800
30	평 생 교 육 국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4,000
31 (신규)	도 시 재 생 실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12,000
재난관리기금			300,000
32	안 전 총 괄 실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	300,000
'20년 이월사업			51,000
33	스 마 트 도 시 정 책 과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47,000
34	안 전 총 괄 실	월드컵 대교 건설	4,000

※ '21년 교통공사 공채이관(7,306억원) 별도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지난 12월 지방채 발행동의안 의결 시, 위원들이 코로나 선제 대응을 위해 지방채 5,000억원 발행을 제안하였으나 3,0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해놓고 9개월만에 추가로 3,000억원을 발행한다는 것은 납득이 어려움. (정진술 위원)

답변) 당시 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7.42% 로 높아 지방채 추가발행이 어려웠으나 현재 채무비율이 23.42%로 낮아짐. (곽종빈 재정기획관)

질의) 금회 동의안 제출(8월 18일) 당시에는 지방채 발행한도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채 발행 계획분 감액이 통과할 것을 전제로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정진술 위원)

답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한제현 안전총괄실)

질의) 서울시의 현재 재정건전성은 어떠한가? (홍성룡 위원)

답변)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상황으로 재정건전성은 악화되어가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기준인 예산대비 채무 비율 25% 이하로 유지하고 있으며, S&P 신용평가 AA등급을 유지중임. (곽종빈 재정기획관)

질의) 지방채 발행금액 3,000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집행 계획이 없음. (성흠제 위원장)

답변)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의 추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코로나-19 대비 지원사업은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활용될 예정임. (곽종빈 재정기획관)

6. 토론요지 : 없 음

7.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 찬성)

10.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의안 번호	2726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18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

- 발행대상 : 재난관리기금 조성
- 발행금액 : 3,000억원
- 필 요 성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 최송천(☎2133-8024)